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91

발의연월일: 2020. 9. 3.

발 의 자:조경태·추경호·이명수

서정숙 • 백종헌 • 홍문표

서병수 • 유경준 • 김형동

정동만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 등을 도시재생선도지역이나 일정 한 요건에 따라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정책이주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 밀집한 지역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제도 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 또는 혁신지구로 지정함으로써 신속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(안 제33조제1항후단 및 제41조제1항후단).

법률 제 호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 적으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41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33조제1항후단에 따른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)	제33조(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	①
이 시급하거나 도시재생사업의	
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직접 또	
는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	
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	
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<u>이 경우 기반</u>
	<u>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</u>
	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
	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정책이주지역을 우선적으
	로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
	<u>할 수 있다.</u>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41조(혁신지구의 지정 등) ①	제41조(혁신지구의 지정 등) ① -
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3조제4	
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	
을 갖춘 지역의 전부 또는 일	
부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의 계	
획(이하"혁신지구계획"이라 한	
다)을 확정하거나 승인을 받아	
혁신지구를 지정(변경지정을	
포함한다)할 수 있다. < <u>후단</u>	<u>이 경우</u>

<u>신설></u>	제33조제1항후단에 따른 정책이
	주지역을 우선적으로 혁신지구
	로 지정할 수 있다.
② ~ ⑥ (생 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